

■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소개 ■

2011. 10. 25. 선고 2010헌바57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 : 합헌결정

김영수 변호사

1.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항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이 사건 법률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대해 가목 내지 다목에서 특별히 정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그 가목 및 나목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구분방식을 원용하여, 다목은 위임입법의 방법을 통하여 각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 입법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보아 합헌으로 선언한 사안입니다.

이 결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조항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그 입법의 내용보다도 입법의 방식이 쟁점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비사업용 토지를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하지 않고 반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열거한 다음 나머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입법방식을 택하였더라도, 법률 전체를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를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2010헌바57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위헌소원](#)